

# 청소년수련시설 여름철 안전관리 안내

## - 재난대비 및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

신록이 무르익는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철에는 각종 청소년활동이 활성화 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풍□수해 등 각종 재난과 식중독 등 위생 관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합니다. 이에 각 수련시설에서 참조하실 수 있는 대비요령을 발송하오니 수련시설을 꼼꼼히 점검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증/신고 된 수련활동의 정보를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및 신고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재난□재해 대비

#### □ 태풍 대비

- TV나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 확인
- 하수구나 건물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어야 함.
-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확인
-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외부에 보관하는 교육장비 및 시설물 등은 단단히 고정

#### ※ 태풍 특보기준 및 행동요령

구분	주 의 보	경 보
특보 기준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행동요령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은 대피 준비 · 고압전선, 전기설비 등 감전유의 · 건물 창문, 출입문 등 고정	· 문과 창문을 잘 닫고 안전을 위해 실내 대기 (붕괴 우려가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대피해야 함.) · 정전에 대비한 비상용품 등을 준비

- 태풍이 지나간 후 물이나 식자재의 위생에 유의하여 섭취
-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등을 보수·복구할 때는 미리 사진촬영
- 침수된 건물은 가스누출, 전기감전의 우려가 있으니 유의

□ 호우 및 홍수 대비

- 옹벽, 비탈면, 공사지역의 배수 및 이상여부 점검과 조치
- 하수구나 건물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어야 함.
-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

※ 호우 특보기준 및 행동요령

구분	주 의 보	경 보
특보 기준	6시간 강우량 70mm 이상 12시간 강우량 110mm 이상	6시간 강우량 110mm 이상 12시간 강우량 180mm 이상
행동 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은 대피 준비</li> <li>· 천둥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li> <li>· 해안가, 비탈면 주변 접근 금지</li> </ul>	
홍수 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근에 하천이 있는 경우 물의 양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범람하거나 하수도로 물이 나올 경우 '전기차단기 내리고, 가스 밸브 잠그고, 상수도 오염대비 깨끗한 물 확보'</li> <li>· 흐르는 물은 유속이 매우 빠르고 오염되었을 수 있으므로 유의</li> <li>· 침수로 대피하였다가 건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붕괴가능성을 미리 점검한 후 출입</li> <li>· 물이 빠진 후에는 가스누출 우려가 있으니 화기사용에 유의하고 반드시 창문 열어 환기</li> <li>· 침수된 음식이나 식재료, 저장식수는 오염 우려가 있으니 식중독에 유의</li> </ul>	

□ 산사태 징후 : 다음 징후가 보이면 신속히 대피

-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
  - ▶ 이때는 땅속에 과포화 된 지하수가 있다는 것으로 위험함.
-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
  - ▶ 이때는 산위의 지하수가 통과하는 토양층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위험함.
- 갑자기 산허리의 일부가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때
  - ▶ 이는 산사태가 발생하는 조짐이므로 미리 대피
-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때,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릴 때
  - ▶ 산사태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즉시 대피하고 행정기관에 신고

※ 세부사항은 「청소년수련활동 안전 종합매뉴얼(201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국민안전처 국민행동요령(<http://www.mpss.go.kr/>)」 참조

## □ 식중독이란

-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  
(식품위생법 제2조제14항)
- "집단식중독"이란 역학조사 결과 식품 또는 물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한 후 2인 이상의 사람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임(WHO, 세계보건기구).

## □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관리

- 식품 취급 종사원의 개인위생관리 철저
  - 1년에 1회 정기 건강진단 실시
  - 발열, 설사, 복통, 구토 등 건강상태 이상 시 의사의 진단 후 조치
  - 본인 및 가족 중에 법정감염병 보균자가 있거나 발병한 경우에는 완쾌될 때까지 조리작업에 참여 불가
  - 손이나 얼굴에 화농성 상처나 종기가 있는 경우 조리작업 참여 불가
  - 손톱 소재, 장신구 착용금지, 상처여부 확인 등 손 위생관리 철저

## ※ 조리종사원이 손 세척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 핸드폰을 만진 경우, 코를 풀거나 재채기를 한 경우
- 난류, 어류, 육류 등을 만진 경우, 쓰레기나 청소도구를 취급한 경우
- 화장실을 이용한 후, 음식을 먹거나 차를 마신 후

## ○ 주방 위생관리

- 냉장·냉동고는 내부 용적의 70% 이하로 식품을 보관하고, 주 1회 이상 청소하며 온도를 주기적으로 측정.
- 식품은 교차오염 예방을 위하여 종류에 따라 분리 보관.
- 식기세척기는 바닥에서 최소한 150cm 이상 위에 설치하고 온도, 수압 등의 계기판은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함.
- 식기와 각종 기물은 청결하게 세척하여 완전히 건조시켜 보관.
- 물로 세척하기 어려운 기물은 더러움을 제거한 후 청결한 행주로 닦고 소독용 알코올을 분무.

- 칼, 도마는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보관하고 살균 시 조사시간을 충분히 함.
- 조리되지 않은 식품과 조리된 음식, 생선류, 채소류를 다루는 도마는 구분해서 사용하여 교차오염을 방지.
- 행주는 5분 이상 열탕 소독하여 사용.
- 식기와 각종 기구는 적합한 방법으로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

※ 식기와 각종 기구에 따른 소독의 종류 및 방법

대상	소독 종류	방법
식기, 행주	열탕소독	끓는 물에 소독(100°C에서 30초 이상)
식기	건열소독	식기표면온도 71°C 이상
칼, 도마, 기구	화학소독	용도에 맞는 "기구 등의 균 소독제"를 구입하여 용법, 용량에 맞게 사용

□ 식중독 예방법

○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 손씻기 : 손은 비누를 사용하여 손가락 사이 사이, 손등까지 골고루 흐르는 물로 20초 이상 씻자.
- 익혀 먹기 : 음식물은 중심부 온도가 85°C, 1분 이상 조리하여 속까지 충분히 익혀 먹자.
- 끓여 먹기 : 물은 끓여서 마시자.

○ 여름철 식중독 예방 유의사항

- 식재료들이 외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적절한 온도관리와 부패 변질에 주의
- 샐러드 등 신선 채소류는 깨끗한 물로 잘 세척하여 섭취
- 육류나 어패류 등을 취급한 칼·도마와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사용
- 이동 중 준비해 간 김밥, 도시락 등의 보관 온도가 높아지거나 보관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아이스박스를 사용하는 등 음식물 섭취 및 관리에 주의

※ 세부사항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매뉴얼」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mfds.go.kr/fm> :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 메뉴)

##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 신고제 개요

인증제도	구분	신고제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근거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
청소년활동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인증하여 청소년에게 양질의 청소년활동 정보 및 참여기록 제공	목적	청소년 활동 환경에 대한 현황 파악과 사전 점검을 통해 청소년활동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활동의 프로그램, 지도력, 활동 환경, 활동 기록관리가 일정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심사하여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제도	개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실시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청소년(9세~24세)	대상연령	19세 미만의 청소년(9세~18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무인증 : 청소년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이 포함된 경우 (청소년단체의 경우 의무인증 면제)</li> <li>임의인증 : 국가, 시설, 단체 등 수련활동을 운영하는 자 중 인증제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li> <li>인증제외 : 불특정 다수를 대상, 단순 체험, 수련활동 관련 법률 위반(위탁제한, 무허가제한)</li> </ul>	활동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숙박하는 수련활동</li> <li>비숙박 수련활동 중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li> <li>신고면제 : 종교단체, 보호자 동반 활동, 다른 법률에 의해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단체</li> </ul>
활동실시 혹은 모집 45일 전 신청	기한	참가자 모집 14일 전 신고
인증신청 - 형식요건검사 - 접수 및 심사 - 인증심의 - 결과고시 - 사후관리(통보, 이행, 변경, 기록 등)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신고수리 - 정보공개- 모니터링
25일(필요 시 현장방문 포함)	처리기간	7일 (신고 전 컨설팅 가능)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	신청주체 (동일)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
활동의 시·공간적 특성에 따라 공통 6개, 개별 5개, 특별 2개 기준 적용	제출자료	신고서, 운영계획서, 지도자 명단, 활동 세부내역서, 보험가입서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장	처리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 신고대상 비교표

구분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	신고대상
허가 받지 않은 수련시설의 설치 및 수련활동 운영	법을 위반사항	
임의단체, 개인의 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		
임의단체, 개인에게 청소년활동을 위탁한 경우		
기업 등의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대상	대상
청소년수련·이용시설의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대상	대상
종교단체의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대상	대상이 아님
부모와 함께 하는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대상	대상이 아님
타법률 관리 법인·단체의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대상	대상이 아님
일정규모 이하 또는 고위험활동이 아닌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단, 종교단체, 부모함께, 타법률제외)	대상이 아님	대상
일정규모 이하 또는 고위험활동이 아닌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청소년단체의 회원대상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 관련 사이트(상세 정보 확인)

사이트명	주 소	주요 기능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www.kywa.or.kr	활동진흥원 홈페이지
청소년활동안전센터	www.kywa.or.kr/yasc	청소년활동안전센터 홈페이지
청소년종합정보시스템	www.youth.go.kr	청소년활동 종합 정보 제공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	http://yap.youth.go.kr	인증신청 및 사후관리
청소년수련활동신고시스템	http://youth.go.kr/singo.do	수련활동 신고 및 컨설팅

□ 수련활동 위탁 관련 주요 확인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프로그램을 위탁해서는 안 됩니다.

**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①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청소년수련활동의 일부를 수탁 받은 자도 포함한다)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